한국원자력학회 2026 추계학술발표회(2026.10.29.)

EU·한국 녹색분류체계의 원자력 활동 평가 비교

A Comparative Analysis of Nuclear Activity Assessment Processes in the EU and Korean Green Taxonomies

이영우*, 문주형, 조재완, 남기솔, 이영준

정책연구부

한국원자력연구원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원자력기술

국민과 세계가 지지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EU·한국 체계의 녹색활동 판단절차

3 판단절차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

4 결어



1. 연구 배경 및 목적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

▪ 탄생 배경

온실가스 감축, 자원순환, 오염 저감 등 환경목표에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 녹색활동 확대 과정에서 어떤 경제활동을 녹색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 필요성 제기

※ 동일한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국가별·기관별로 녹색 여부에 대한 판단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문제 발생

- 특히, 원자력과 같이 환경적 편익과 위험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녹색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더욱 중요

▪ 도입 현황

- 2020년 7월 EU를 시작으로 중국('21년) 등에서 녹색분류체계가 도입되어 확산

※ '22년 4월 기준, 36개국이 녹색분류체계를 개발했으며 추가로 12개국은 개발 중

- 우리나라도 2021년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녹색채권('23~), 녹색여신('25~) 등 지속가능금융 체계 구축에 기여

※ EU Taxonomy는 법적 강제력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마련해 정책 전반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되는 특징

[녹색분류체계 글로벌 도입 현황(2022년 기준)]



출처) Climate Bonds, 2022.

주요국의 원자력 녹색성 판단 결과

- **국가지역별 인정 방식과 적용 범위**

기준 충족에 따른 조건부 인정

EU

기술적·환경적 기준 충족

↓

조건부 녹색 인정

적용 범위

신규 건설
계속 운전
폐기물 최소화 기술

한국

정책 목적에 따라 유형을 먼저 구분

↓

녹색부문 / 전환부문

원전 안전 R&D

신규 건설 계속 운전

↓

각 부문 기준 충족 시 녹색·전환 인정

녹색 범주에 포함

중국

청정에너지 범주에 포함

↓

녹색 포함

적용 범위

원자력 발전소·복합시설 건설 및 운영

명시적·공통 기준 부재

일본

명시적 기준 없음

↓

원자력 포함 여부를 프로젝트 단위로 판단

개별 프로젝트 판단

ASEAN

공통 기준 없음

↓

국가별 상황 반영 명확한 기준 부재

국가별 접근

연구 목적

- **"EU 및 한국 녹색분류체계는 원자력을 어떠한 기준·절차로 녹색활동(or 전환활동)을 확인하는가?"**
  - EU와 한국은 원자력에 대해 유사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으나, 녹색성을 판단하는 기준의 구성과 적용 순서에는 차이가 있음
  - 이러한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동일한 원자력 활동이 각 체계에서 어떠한 논리와 절차를 거쳐 녹색·전환활동으로 판단되는지 확인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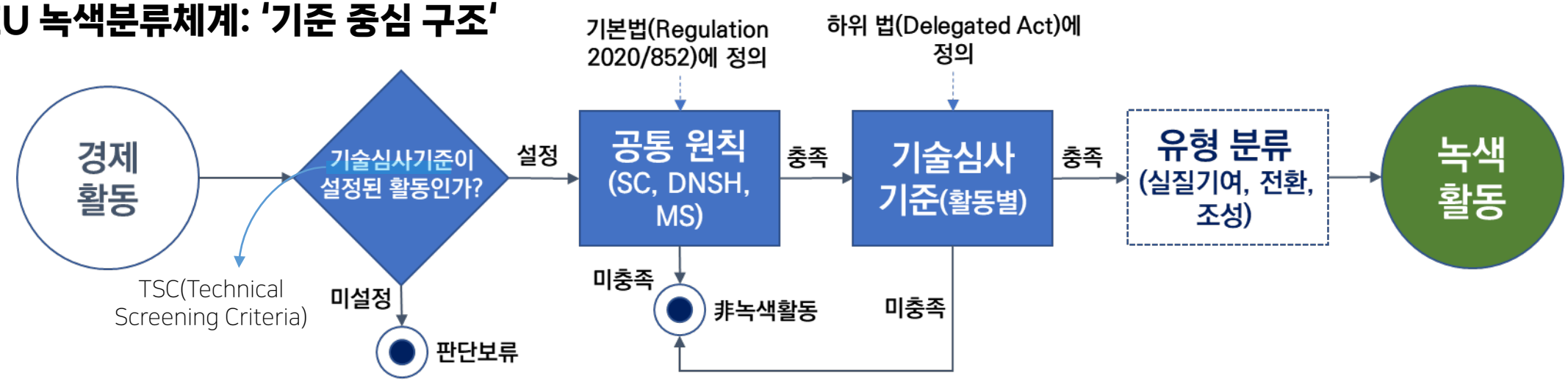
- **"한국 녹색분류체계의 녹색성 판단 기준·절차는 어떠한 특징과 한계를 가지며,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가?**
  - 녹색분류체계는 단순히 현재의 녹색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을 넘어, 향후 새로운 기술의 포함과 기준 개정에도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체계임
  - 따라서 한국 체계의 판단 기준·절차가 갖는 특징과 한계를 확인하고, 판단의 일관성·투명성·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발전 방향을 검토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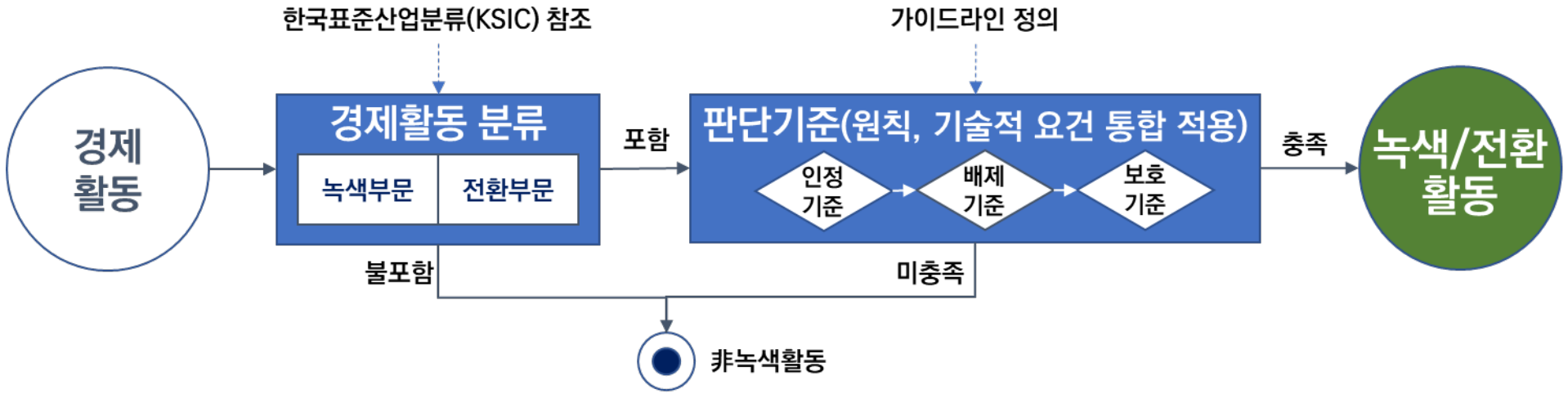
2. EU·한국 체계의 녹색활동 판단절차

녹색분류체계s 판단절차 개요

- **EU 녹색분류체계: '기준 중심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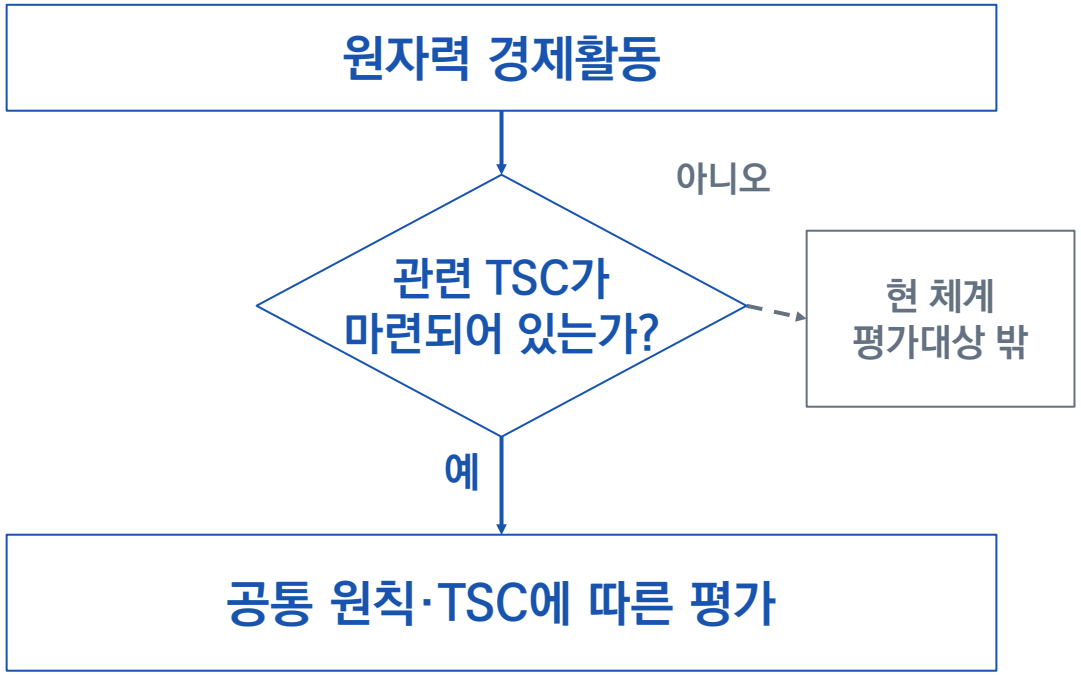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유형 사전 분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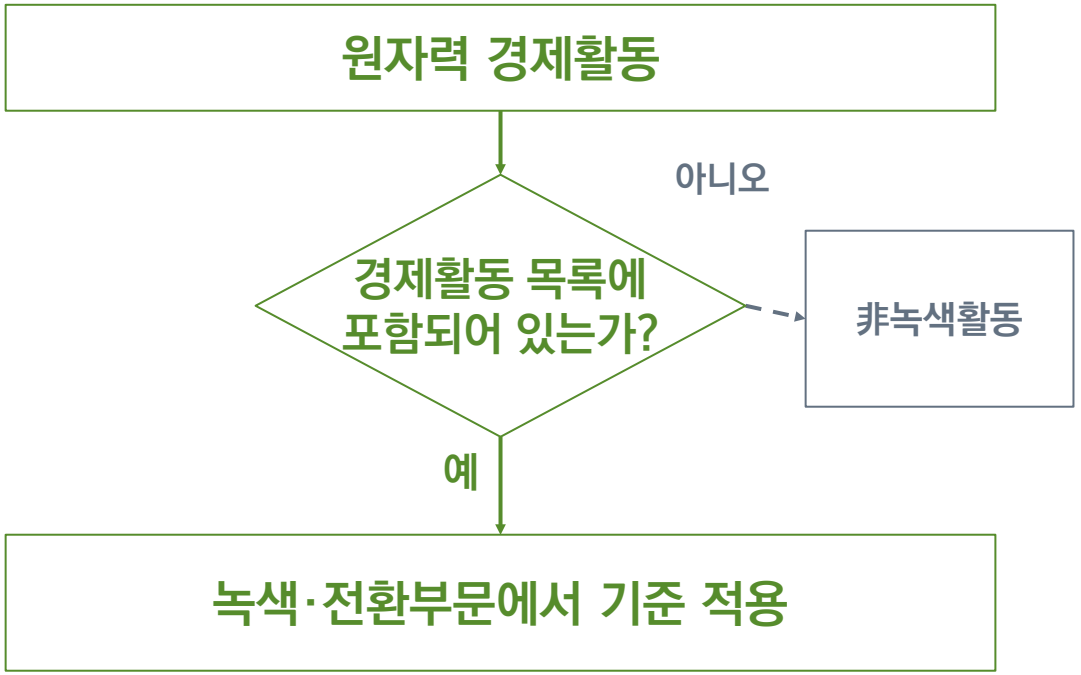
녹색분류체계s 비교: ① 평가 대상 선정

- **평가 대상 선정: 사전적으로 고려되어야 평가가 가능**

EU



한국



한국은 평가대상 편입 단계에서 녹색활동 포함 여부 및 활동유형을 함께 판단

(참고) 한국 체계의 평가 대상 리스트

제1절 녹색부문 : 공통			
가. 산업	(1)	혁신품목 제조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혁신품목 소재·부품·장비 제조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나. 연구개발	(1)	연구·개발·실증	연구·개발·실증(RD&D;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과 관련된 제반 활동 ※ ICT 솔루션·시스템 구축 포함
제1절 녹색부문 : 1. 온실가스 감축			
가. 산업	(1)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제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기술인 (1) 전기화(Electrification) 및 전기활용기술(전기가열로 등), (2) 수소환원제철, (3) 비탄산염, (4) 혼합시멘트, (5) 불소화합물(F-gas; Fluorinated gases) 대체 및 제거 관련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제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기술인 (1) 재생에너지, (2) 수소, (3) 암모니아, (4)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5) 제로에너지 건축, (6) 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CCS), (7) 바이오차(Biochar), (8) 전기화(Electrification) 및 전기활용기술(전기가열로 등), (9) 수소환원제철, (10) 비탄산염, (11) 혼합시멘트, (12) 불소화합물(F-gas; Fluorinated gases) 대체 및 제거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3)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철강 제조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소결광·코크스·선철 생산 및 전기아크로를 이용한 조강 반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최적가용기법(BAT)으로 철강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4)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멘트 제조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회색클링커 소성시설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5)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유기화학물질 제조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해로를 이용한 올레핀 생산, 방향족 생산, 부타디엔 생산, 스티렌 모노머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제2절 전환부문 : 1. 온실가스 감축			
가. 산업	(1)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연료전환, 에너지 절감, 자원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관련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나. 발전·에너지	(1)	액화천연가스(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또는 혼합가스*를 이용하여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바이오가스·수소·암모니아·부생가스·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중 두 가지 이상 혼합한 가스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기술개발(무탄소 혼소, CCS 등) 수준 등을 감안하여 2030~2035년까지 공사계획을 인가받은 설비에 대해 인정
	(2)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 (신규건설)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원자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2045년까지 건설 허가를 받은 설비에 대해 인정
	(3)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 (계속운전)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어 계속운전을 목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개조하는 활동 ※ 2045년까지 계속운전을 허가받은 설비에 대해 인정
	(4)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수소(블루수소) 제조	액화천연가스(LNG) 기반으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다. 수송	(1)	친환경 선박 건조	친환경 선박의 건조 및 이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2)	친환경 선박 도입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 또는 관련 선박의 유지관리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녹색분류체계s 비교: ② 공통 원칙의 적용

- **공통 원칙의 적용: 3가지 원칙이 대응**



개념적 대응 관계는 유사하나, 공통 원칙의 독립성과 가시성은 차이

(참고) EU·한국 체계의 공통 원칙 제시

CHAPTER II

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C ACTIVITIES

Article 3

Criteria for 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c activities

For the purposes of establishing the degree to which an investment i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an economic activity shall qualify a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where that economic activity:

(a) contributes substantially to one or more of the environmental objectives set out in Article 9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0 to 16;

(b) does not significantly harm any of the environmental objectives set out in Article 9 in accordance with Article 17;

(c) is carried out in compliance with the minimum safeguards laid down in Article 18; and

(d) complies with technical screening criteria that have been established by the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 (3), 11(3), 12(2), 13(2), 14(2) or 15(2).

※ Article 9: 6대 환경 목표, Article 10~16: 6대 환경목표의 SC, Article 17: DNSH, Article 18: MS

[EU 녹색분류체계의 SC 원칙 예시[4]]

구분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완화의 인정	• 온실가스 배출의 회피 또는 감축, 또는 온실가스 제거의 증대를 통해(공정 혁신 또는 제품 혁신을 포함), 파리협정 온도목표에 부합하면서 기후시스템에 대한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에 상당히 기여하는 경제활동
	• [대표 활동] ▲재생에너지 생산·송전·저장·배전 또는 이용, ▲에너지 효율 개선(발전 제외), ▲청정 또는 기후중립적 이동성(mobility) 확대, ▲재생가능 소재로의 전환, ▲환경적으로 안전한 탄소포집 저장 활용 확대, ▲육상 탄소흡수원(삼림 등)을 강화, ▲에너지시스템의 탈탄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 ▲청정하고 효율적인 연료 생산 등
저탄소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경제활동의 인정	•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는 경로에 부합하는 기후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단계적 감축(특히, 고체 화석연료로부터의 배출 감축)을 포함
	• [필수 요건] ▲해당 부문 또는 사업 내에서 최상위 수준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 수준, ▲저탄소 대안의 개발 및 확산을 저해하지 않음, ▲ 탄소집약적 자산에 대한 고착을 초래하지 않음

ⓥ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가. 산업

(1) 혁신품목 제조

① 활동기준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6대 환경목표	‘붙임7.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에 해당하는 활동인가?				택1
	[6대 환경목표 선택]				
	온실가스 감축	☐	순환경제로의 전환	☐	
	기후변화 적응	☐	오염 방지 및 관리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생물다양성 보전	☐	
③ 배제기준					
이외 환경목표	인정기준에서 선택하지 않은 환경목표에 대한 공통 배제기준 (붙임 1~6 중)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녹색분류체계s 비교: ③ 기술적 요건의 배치와 적용

- **기술적 요건의 배치와 적용 (한국 사례)**

한국: 신규 원전 건설의 주요 요건

	내용상 기능
온실가스 배출 기준	SC
고준위폐기물 저장·처분 계획 및 법률	DNSH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	DNSH
최신 기술기준	DNSH
사고저항성핵연료 (ATF)	DNSH
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해체비용	DNSH

활동별 판단기준

- 인정기준
- 배제기준
- 보호기준

SC·DNSH 방지 기능 등 다른 주요 요건들이 인정기준에 함께 배치

녹색분류체계s 비교: ④ 활동 유형의 부여

- **활동 유형의 부여**

EU: 유형은 적격성 판단後 결정



활동 유형이 평가의 기여 방식·관련 요건과 연결

한국: 유형을 先부여한 뒤 해당 부문에서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해도 전환부문에 속함

유형의 사전 부여는 기술적 적격성과 별도로 정책 신호를 전달할 수 있음

녹색분류체계s 비교: 종합

분석 항목	EU	한국	주요 의미
평가대상 선정	기술심사기준 마련	활동 등재 및 유형 부여	신규 활동 편입 방식
공통 원칙	상위 공통 요건	활동별 기준 내 적용	원칙 적용의 식별
기술적 요건	공통 원칙의 구체화	주요 요건 인정기준 집중	원칙·요건 연결
활동 유형	기여 방식과 연결	판단기준 적용 전 구분	정책 신호

주요 차이는 개별 요건의 내용보다 판단구조의 순서와 관계에 있음



3. 판단절차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

사전 부여된 활동 유형이 금융지원의 우선순위에 영향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녹색부문 접수하기	전환부문 접수하기

신청대상

2026년도 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예정) 기업
※ 공고 중이라도 2026년에 발행된 한국형 녹색채권이면 소급하여 적용 가능

신청기간

'26. 6. 29.(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되며, 최후순위로 선정된 기업은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지원

신청부문

녹색, 전환 2개 부문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구분

신청요건 및 선정사항

구분	주요 내용	
장기신용등급 (회사채신용등급)	○ 대기업 · 공공기관 등	A0등급(유효등급) 이상 받은 기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	BBB등급(유효등급) 이상 받은 기업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 여부	○ 녹색채권 발행(예정) 프로젝트가 녹색분류체계의 활동기준을 충족하는 녹색경제활동 ※ 단, 실제 녹색채권 발행에서는 활동 · 인정 · 배제 · 보호 기준을 모두 충족 필요 및 이에 따라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 불가	
중복(동일)프로젝트 여부	○ 녹색채권 발행(예정) 프로젝트가 이전에 한국형 녹색채권으로 발행되어 이차보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 ※ 단, 지원금을 공고에서 정한 한도 이내로 지원받은 경우는 예외	
자금 사용	○ 설비투자금을 비롯한 시설자금 (운영비·예비비 불가) ※ 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녹색분류체계 해당 경제활동에 부합하는 운전자금(자금산출 내역 확인 필요)을 50% 미만으로 포함할 수 있음 ※ 단, 일부 경제활동에 한하여 최종사용자의 시설투자 및 유형자산 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녹색분류체계 해당 경제활동에 부합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으로 인정	
선정사항	○ 기업규모(중소·중견기업 우선 선정), 녹색채권 발행일자, 경제활동 부문별(녹색·전환), 특정 경제활동 비율 등 검토 ※ 중소·중견기업 및 일부 경제활동의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있을 수 있음	

선정방법

선착순 접수 후 신청요건 충족 시 선정
※ 단, 녹색부분 및 중소기업 · 중견기업 우선하여 선발 예정

**기술평가 이전에 활동유형을 부여하는 구조는 단순한 분류상의 차이를 넘어,
이후 정책·금융 지원에서 실질적인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3. 판단절차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

활동별 기준 구조가 달라 신규 활동 설정의 일관성 하락

(1)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제조

① 활동기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기술인 (1) 전기화(Electrification) 및 전기활용기술(전기가열로 등), (2) 수소환원제철, (3) 비탄산염, (4) 혼합시멘트, (5) 불소화합물(F-gas; Fluorinated gases) 대체 및 제거 관련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별도 인정기준 미적용

(3)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철강 제조

① 활동기준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소결광·코크스·선철 생산 및 전기아크로를 이용한 조강 반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최적가용기법(BAT)으로 철강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신설·증설·개조하려는 '소결광 생산공정의 제품 생산' 관련 설비의 제품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0.273192톤 CO_2eq./제품 톤(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또는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
	나. 신설·증설·개조하려는 '코크스 생산공정의 제품 생산' 관련 설비의 제품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0.814805톤 CO_2eq./제품 톤(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또는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
	다. 신설·증설·개조하려는 '선철 생산공정의 제품 생산' 관련 설비의 제품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0.388012톤 CO_2eq./제품 톤 (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또는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
	라. 신설·증설·개조하려는 '전기아크로를 이용한 조강 반제품 생산' 관련 설비의 제품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0.307898톤 CO_2eq./제품 톤(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
	마. 최적가용기법(BAT)을 적용하여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가? * 상기 최적가용기법 인정기준은 ISO 14030-3에 따른 기술 목록이 제정되면 관계부처 협의 후 적용 예정	☐
③ 배제기준		

정량적 성과기준 중심

(2)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신규건설)

① 활동기준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원자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045년까지 건설 허가를 받은 설비에 대해 인정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 계획이 존재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속한 확보 및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가?	☐
	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는가?	☐
	다.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ATF)를 적용하는가? *「원자력안전법」「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및 고시」내 최신 기술기준을 모두 준수	☐
	라. 전력, 열의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100g CO_2eq./kWh 이내에 해당하는가? ※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라 산정	☐
	마.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해체비용을 보유*하고 있는가? *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발전소 영구 정지 시점까지 필요한 비용 확보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해양 또는 담수에 대한 온배수 영향을 관리하고 있는가?	☐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환경기여·안전·제도요건 복합 적용

새로운 경제활동을 추가할 때 기존 활동과 같은 논리로 기준을 설계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기준의 일관성·설명가능성 약화 → 금융기관·투자자가 별도의 내부 기준이나 추가 검토 요구할 가능성

3. 판단절차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

신규 활동의 평가대상 편입 절차가 명확하지 않음

한국: 정기 보완 방침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은 존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7. 적용 현황 및 향후계획

환경부는 국내 정책, 국제동향,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가이드라인을 원칙적으로 3년 주기로 보완해 나갈 것이다. 2023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본격 적용과 함께, 이차보전 지원사업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발굴하면서, 녹색분류체계 확산 및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U: 신규활동·기준개정을 위한 상시 요청 및 검토 창구 운영

EU taxonomy stakeholder request mechanism

A tool for stakeholders to provide their feedback on the EU taxonomy.

Page contents

Overview

How the requests will be assessed and considered

Related links

Overview

In order to address suggestions from stakeholders regarding activities in the EU taxonomy, the 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 together with the European Commission set up the stakeholder request mechanism.

The tool allows stakeholders to submit suggestions based on scientific and/or technical evidence on new economic activities that could be added to the EU taxonomy or on potential revisions of technical screening criteria of existing activities. In addition, it provides stakeholders with a channel to ask clarification and implementation questions on the EU Taxonomy Delegated Acts, including general questions, as well as more specific questions on the technical screening criteria and reporting requirements.

The stakeholder request mechanism runs continuously, allowing respondents to submit their input at any given time. The requests will be assessed by the Commission with the support of the Platform's Technical Working Group at specific "cut-off" dates.

How the requests will be assessed and considered

The Platform will analyse relevant requests in the context of their recommendations on potential revisions of the EU taxonomy and/or additional economic activities, as part of the work of the Platform's Technical Working Group. The Platform may also be requested, where relevant and appropriate, to support the Commission in responding to question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echnical screening criteria and reporting requirements. These questions will be taken into account by the Commission for future FAQs documents.

신규 활동이 어떤 조건과 절차를 거쳐 평가체계에 진입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 신규 기술의 녹색성 판단 시점과 적용기준을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음



4. 결어

판단절차의 차이는 정책·금융 활용상의 문제로 연결

판단절차의 차이 (주요 논점)	EU의 특징	한국의 특징	발생 가능한 문제 (정책·금융 활용 측면)
1 평가대상 선정 (신규 활동 편입)	• 이해관계자의 제안을 바탕으로 신규 활동·기준 개정을 위한 상시 요청 및 검토 창구 운영 • 과학적·기술적 근거에 기반하여 단계적으로 평가대상에 편입	• 정부 주도의 정기적 보완 방침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은 존재 • 경제활동 목록에 포함되어야 평가 가능	신규 활동이 어떤 조건과 절차로 평가대상에 편입되는지 예측하기 어려움
2 공통원칙 적용 (SC·DNSH·MS)	• SC, DNSH, MS가 독립된 상위 단계로 명확히 구분되어 순차적으로 적용	• 공통원칙이 활동별 판단기준에 통합되어 내재적으로 적용	각 기술요건이 어떤 판단원칙을 구현하는지 확인·검증하기 어려움
3 기술요건 배치 (TSC 등)	• 기술선별기준(TSC)을 중심으로 구조화·표준화 • 활동별로 일관된 형식과 기준 체제를 유지	• 성격이 다른 기술요건(정량·정성, 설계·운영 등)이 활동별로 통합되어 제시	신규 활동의 기술기준을 기존 활동과 일관된 논리로 설계·비교하기 어려움
4 활동유형 부여 (분류 방식)	• 기술적 판단 결과에 따라 활동 특성을 설명(별도 유형 사전 부여 없음)	• 경제활동을 평가 이전에 녹색·전환 유형으로 사전 부여	기술적 판단보다 유형이 먼저 정책·금융 신호로 작용할 수 있음

현재 원자력에 **적용되는 세부 기술요건은 EU와 한국이 대체로 유사하지만,**
이를 적용하는 순서와 관계의 차이는 평가의 일관성·예측가능성과 정책·금융 활용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음

제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선방향

현재 문제	개선방향	기대효과
사전 유형화	녹색·전환 유형을 평가 결과와 정책적 역할을 설명하는 정보로 활용	기술판단과 정책신호 분리
기준 관계 불명확	공통원칙과 활동별 기술요건의 연결관계 명확화	기준 설계의 일관성·설명가능성 향상
편입절차 불명확	신규 활동의 제안·검토·선정·기준개발·반영 절차 공식화	신규기술 진입의 예측가능성 향상

필요 시 활동 추가·삭제 및 기준 개정 절차의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검토

Nuclear technologies for a better world



KAERI
한국원자력연구원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